Ⅰ. 단기 국별인수방침

❑ 아래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를 원칙적으로 정상인수 대상국으로 함

1. 수출결제조건 등 인수제한국가 (35개국)

구분	국가	신용장	무신용장
1	가나	정상인수	개별심사 * 부보율 90% 이내
2	가봉	정상인수	개별심사
3	나이지리아	개별심사	개별심사
4	니제르	개별심사	개별심사
5	라이베리아	건별승낙	건별승낙
6	러시아	건별승낙 * 부보율 : 대기업 70% 이내 중소·중견기업 90% 이내	건별승낙 * 부보율 : 대기업 70% 이내 중소·중견기업 90% 이내
7	말리	건별승낙	건별승낙
8	모잠비크	정상인수	개별심사 * 부보율 85% 이내
9	몬테네그로	건별승낙	건별승낙
10	몽골	개별심사	건별승낙
11	미얀마	건별승낙 * 부보율 90% 이내	건별승낙 * 부보율 90% 이내
12	벨라루스	건별승낙 * 부보율 : 대기업 70% 이내 중소·중견기업 90% 이내	건별승낙 * 부보율 : 대기업 70% 이내 중소·중견기업 90% 이내
13	볼리비아	개별심사 * 부보율 80% 이내	개별심사 * 부보율 80% 이내
14	사이프러스	정상인수	개별심사
15	스리랑카	개별심사 * 부보율 : 대기업 70% 이내 중소·중견기업 90% 이내	건별승낙 * 부보율 : 대기업 70% 이내 중소·중견기업 90% 이내

구분	국가	신용장	무신용장
16	아르헨티나	개별심사 * 부보율 90% 이내	개별심사 * 부보율 70% 이내
17	아이티	건별승낙	건별승낙
18	앙골라	개별심사	건별승낙
19	에콰도르	정상인수	개별심사 * 부보율 70% 이내
20	에티오피아	건별승낙	건별승낙
21	엘살바도르	정상인수	개별심사 * 부보율 90% 이내
22	우간다	정상인수	개별심사
23	이라크	개별심사	개별심사 * 부보율 80% 이내
24	이란	건별승낙	건별승낙
25	이집트	정상인수	개별심사 * 부보율 90% 이내
26	잠비아	개별심사 * 부보율 85% 이내	건별승낙 * 부보율 85% 이내
27	조지아	정상인수	개별심사
28	케냐	개별심사	개별심사
29	코소보	건별승낙	건별승낙
30	쿠바	건별승낙	조건부 건별승낙 * 개별 보험요율 적용
31	키르기즈공화국	정상인수	개별심사
32	튀르키예 (구 터키)	개별심사	개별심사 * 부보율 : 대기업 90% 이내
33	튀니지	정상인수	개별심사 * 부보율 90% 이내

구분	국가	신용장	무신용장
34	파키스탄	정상인수	건별승낙 * 부보율 80% 이내
35	푸에르토리코	정상인수	개별심사

주) 단, 말레이시아,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연합, 헝가리의 무신용장방식 중계무역은 개별심사 유지

2.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13개국)

구분	국가	신용장	무신용장
1	남수단	제3국 지급보증부 인수	제3국 지급보증부 인수
2	레바논	제3국 지급보증부 인수	제3국 지급보증부 인수
3	리비아	제3국 지급보증부 인수	제3국 지급보증부 인수
4	베네수엘라	제3국 지급보증부 인수주)	제3국 지급보증부 인수주)
5	부탄	제3국 지급보증부 인수	제3국 지급보증부 인수
6	소말리아	제3국 지급보증부 인수	제3국 지급보증부 인수
7	수단	제3국 지급보증부 인수	제3국 지급보증부 인수
8	시리아	제3국 지급보증부 인수	제3국 지급보증부 인수
9	아프가니스탄	제3국 지급보증부 인수	제3국 지급보증부 인수
10	예멘	제3국 지급보증부 인수	제3국 지급보증부 인수
11	우크라이나	제3국 지급보증부 인수	제3국 지급보증부 인수
12	팔레스타인	제3국 지급보증부 인수	제3국 지급보증부 인수
13	짐바브웨	제3국 지급보증부 인수	제3국 지급보증부 인수

주) 단, Cadivi의 수입승인거래는 건별승낙 가능(부보율 80%)

< 용 어 정 의 >

◦ **정상인수** : 별도의 인수제한조치 없이 인수하는 것을 의미

◦ **개별심사** : 인수담당자에 의한 한도(인수한도, 보상한도 및 보증한도를 말함) 책정 절차(자동한도 책정절차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거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하며, 회전운용을 원칙으로 함

◦ **건별승낙** : 하나 또는 수개의 수출계약서(또는 신용장)별로 보험인수금액을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하며, 회전운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3국 지급보증부 인수** : 해당 수입국내 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해 인수 관련 내규에서 정한 지급보증인의 대상, 요건 등을 충족한 금융기관, 기업 등의 지급보증을 조건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하며, 신용장 거래에 대하여는 해당 신용장에 대하여 타 금융기관의 확인행위(Confirm)를 지급보증으로 간주

Ⅱ. 중장기 국별인수방침

❑ 특별히 인수를 제한하는 국가는 없으며, 모든 국가에 대해 건별 승낙을 원칙으로 함.